입법동향 – 2025년 제3호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일 잘 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차 례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7
2.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1
3.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 16
4.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 ····· 19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25
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 27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일본의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입법례 ····· 43
2. 「미국의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건조 관련」 입법례 ····· 50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 61

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1. 일반입찰 시 종전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가점부여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 ····· 67
2.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 체결 조례 규정 가능 여부 ····· 75

Ⅵ. 법령 해석 사례

1.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사육 시 가축사육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81
2. 장애인 등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행사의 범위 ····· 85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9456호, 2025. 1. 3., 제정】

□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 제정이유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서울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의원과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의회를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제4조).

나.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활성화 사업, 청렴도 평가, 청렴도 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제9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4곳(서울, 광주, 강원, 전남)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2024년도 **우리 도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3년도 대비 1등급이 낮아진 **4등급**「청렴체감도: 4등급(▼ 1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2등급)」으로 청렴도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어 매년 평가결과 공개[국민권익위]

○ 이에 따라, 공직자의 **청렴문화 분위기 조성** 및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9456호, 2025. 1. 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시의회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서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민간전문가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공직자 청렴도 평가·조사
3.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의2(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의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도 평가**) ① 의장은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 ① 의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등)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부서, 공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9456호, 2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2. 4., 경상남도조례 제5800호, 2025. 2. 4., 제정】

□ 상임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 경상남도 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디지털 소외계층 및 도심 간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장소에 대해 규정함(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다.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대해 규정함(제8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8곳(강원,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전남)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디지털 소외계층 및 도심간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위해 **2020~2024년 까지 국비(70%)와 통신사(30%)의 매칭 사업**으로, **국민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 *통신비 절감효과(4.26/5점), 이용 편리성(4.16/5점): 과기부 보도자료(2024.10.23.)

○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 예산은 2023년 약 128억원, 2024년 약 4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2025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된 상황임.**

○ 도내 공공와이파이 설치 장소는 총 1404개소(1개소 설치비용: 약 4백만원)로 주로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설치되었으나 아직도 미 설치된 장소가 남아 있는 바, **도민의 정보통신 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2. 4., 경상남도조례 제5800호, 2025. 2. 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국가와 공공단체 및 그 산하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란 경상남도(이하 “도” 라 한다) 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4.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실질적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3. **도내 시·군과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연간 집행계획**
4.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설 현황, 설치계획, 이용 수요, 이용 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운영실태 및 품질점검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관리**
2.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통합관리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센터 업무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품질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기준, 정비 방안 및 장비 규격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경상남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관련 지침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즉시 통보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2025.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정]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시행 2025. 1. 2., 경기도조례 제8242호, 2025. 1. 2., 제정】

□ 상임위원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 위기임산부: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실태조사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제5조~제6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5곳(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7월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전북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익산 소재) **운영, 한부모 시설 입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자들의 노출 우려로 지원 대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실태조사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도내 **위기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 및 위기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시행 2025. 1. 2., 경기도조례 제8242호, 2025. 1. 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에게 제4조와 관련하여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①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산전·산후 지원 등에 관한 정보제공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4.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자에 대한 비밀상담 지원
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연계
6.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조치
7. 임신·출산 등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8.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보호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5.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제정]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

【시행 2025. 1. 2., 경기도조례 제8242호, 2025. 1. 2., 제정】

□ 상임위원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 기대수명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으나, 빈곤·질병·고령화 문제 등으로 **삶의 질은 계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건강도시 조성 사업 추진 및 건강도시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제5조~제8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4곳(경남, 인천, 충남, 경북)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건강도시란** :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가는 가운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함(세계보건기구 2004).

○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2021. 12. 21.)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건강도시 조성(제6조의5)에 노력하여야 하고, 실제 도내에서 **군산시가 건강도시 우수사례로 선정**(2024년)되는 등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음.

【2024년 군산시 사례】-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우수상 수상
주제명: 철길따라 부는 신나는 건강바람, 군산을 움직이다.
추진내용: 도시바람길숲 조성, 월명공원 등 황토길 조성

○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건강 증진을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

【시행 2025. 1. 2., 경기도조례 제8242호, 2025. 1. 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허약하지 않거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과정에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도시 지표에 따라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신체, 정신, 사회, 환경 등 도민의 전인건강 실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운영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2.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3. 건강도시 관련 지역사회 자원 발굴·활용

4. 건강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상남도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조성 관련 주민 제안

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부지사

2.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건강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위원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 ① **도민은 건강도시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25.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제정】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보건복지부령 제1087호, 2025. 1. 24., 제정】

□ 제정이유

◇ 효과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지역손상관리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거나 그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현 행	제 정
<신 설>	제5조(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지역손상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해당조례: 없음

○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5. 1. 24.)됨에 따라 시·도 지사는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손상**: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함.

○ 상위법령에서 **지역손상센터의 설치기준, 운영기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우리 도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우리 도민들이 손상으로 인해 개인적 고통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구급차이용 손상 환자의 연령별 환자 수 등

(단위: 명)

전체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26,342	728	1,515	2,144	1,812	2,739	3,939	4,695	8,770

자료출처: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자료(2025년 2월 발행)

2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73호, 2025. 2.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제58조의2(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도(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나.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시·도환경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 **다. 시·도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라.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이 조에서 "시·도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 **초안의 공고·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등의 의견수렴** **마.** 시·도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검토·반려 및 **시·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바.**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완료 전 **시·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 금지** **사.**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및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재평가 등 **사후관리** **아. 시·도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42조제1항* 일부개정(2024. 2. 20.)으로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 우리 도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2024. 12. 6.)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2025. 2. 18.)되면서 조례에 명시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지만,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2. 6.,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652호, 2024. 12. 6.,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경관”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말한다.
4.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의 평가를 말한다.
5.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란 「환경보건법」 제13조의 평가를 말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이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7. “사업자”란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자 및 도민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 법 제22조 및 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및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제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협의 요청)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제출방법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검토)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한 절차 이행 여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평가서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보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장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보완·조정 등 요청사항이 누락 또는 적정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

제8조(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가 협의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가 완료된 평가서 심의·의결 등에 관한 사항
2. 전북특별법 제9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 및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전북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의 담당국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평가서 내용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⑩ 평가서에 대한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동의: 평가서의 내용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 규정」 에 따른 검토 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함
2. 조건부 동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보전방안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3. 재심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⑪ 위원장은 별도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1.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사업시행과 관련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감수 등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사업시행자와 임직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평가서 심의와 관련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4장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운영

제13조(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94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해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경·도시계획·건축·환경·농림·산림자원 또는 생태 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북특별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의 심의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제5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3.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4.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5. 경관영향 저감방안
6.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⑦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제14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지사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3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제3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통보, 자료제출·조사 및 조치 명령 등에 관하여는 법 제39조와 법 제40조를 준용한다.

제15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지사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법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제7조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방법,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제6장 보칙

제1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심의위원,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여부, 범위, 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준용)

① 제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협의요청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사전공사의 금지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8조, 제22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66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② 전북특별법 제9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19조(과태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의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4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⑥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과태료 규정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르며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2024. 12. 6. 조례 5652>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일본의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고향납세제)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5-2호(통권 제265호), 조경희】

◇ **우리 정부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기부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지방재정 확충 규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기부 주체를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일본은**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기부 주체를 법인까지 가능하게 한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일본명: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신설**하였다. 기업형 고향납세제의 **초기 실적은 저조**하였으나, **2020년** 공제액을 대폭 상향한 제도 개선 이후에 **실적이 크게 증가**하여 **2019년 대비 2023년 기부금액은** 13.9배 증가한 **470억 엔**(약 4,400억 원), **참가기업은 6.8배 증가한 7,680개사**가 되었다.

◇ **현재 우리 국회**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주체에 법인도 포함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면 이를 **준조세로 인식할 우려가 있으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에서도 도입 초기에는 제도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노력하였으나, 현재는 사업 검증 및 투명화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둘러싼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입법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주제어 고향사랑기부제, 기업형 고향납세제,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지역재생

□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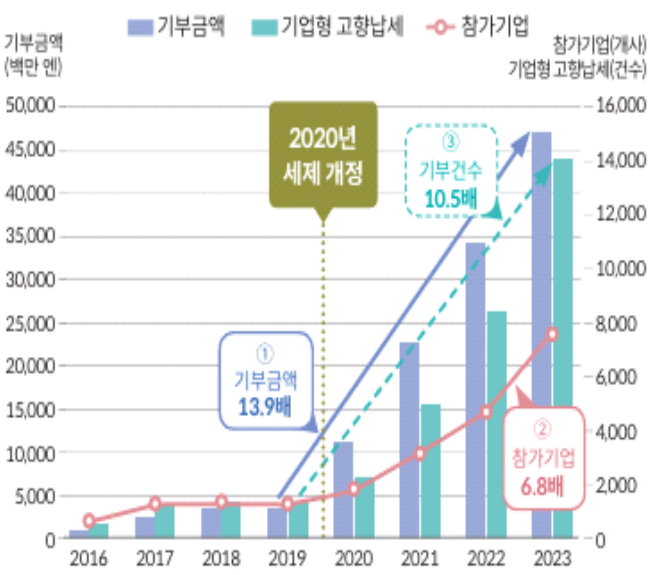
❍ 일본의 기업형 고향납세제는 정부가 인가한 **지역재생계획상 사업에 대해 기업이 기부할 경우에 일반 법인기부 공제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로 법인 관련 세금**(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법인세)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일본 기업형 고향납세제는**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安倍) 정부의 **지역재건정책인 지방창생(地方創生)과 관련**되어 있다. 지방창생은 아베 정부가 만든 신조어로, 지방창생에서 **'창생'은 이제까지는 없었던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로 지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 2013년 전 총무대신(우리나라 행정안전부장관에 해당)인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는 인구가 2008년 1억 2,808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040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가능단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마스다 보고서'(増田レポート)를 발표했다.
- **일본 정부는 2014년 「지역·사람·일자리 창생법」(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을 제정**하고, **2016년 4월 지역·사람·일자리 지역종합전략을 지원할 목적으로 개정 「지역재생법」(地域再生法)에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규정**하였다.

❍ 기업형 고향납세제 도입 초기에는 실적이 저조했으나, 2020년 세제 혜택을 강화한 후에 크게 상승하고 있다.

- **기부금액은 2019년 33.8억 엔**에서 **2023년 470억 엔으로 13.9배 증가**했고, **참가기업도 1,117개사에서 7,680개사로 6.8배 증가**했다. 그리고 **기부 건수 역시 1,327건에서 14,022건으로 10.5배 상승**했다.

그림 1 연도별 기업형 고향납세 실적



출처: 内閣官房[5] 등을 참고하여 작성

□ 기업형 고향납세제 관련 법률

1. 「지역 · 사람 · 일자리 창생법」

❍ 「지역·사람·일자리 창생법」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도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살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해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이다.

- **지방창생의 비전은**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지방의 성장 활력을 되찾는 것으로, 그 활동은 **지역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의욕을 상승**시킬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제1조). 예를 들면 관광자원 개발, 지역브랜드나 특산품 기획, 인재 육성 등의 서비스 관련 활동과 공공 교통 정비, 주택지 개발, 상업시설이나 레저시설 건설 등 인프라 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 일본 정부는 지역의 **지방창생 활동에 대해 인적지원, 재정지원, 정보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국가 공무원을 파견하며, 자율성이 높은 교부금과 세제 특례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구·사회 인프라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분석 시스템을 지원한다(제3조).
- 특히, **동법은** 지역·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수립에 있어서 기존의 다른 법률과 달리 **'인구의 현황과 장래 예측'을 반영한 점과 '종합전략의 실시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의 설정'으로 효율성을 검증**한 점에서 **특징**이 있다(제8조제3항).

2. 「지역재생법」과 과세 특례규정

❍ 「지역재생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사람·일자리 창생 기부활용사업(기업형 고향납세 활용사업)에 대해 기업이 기부할 경우 세제상 특별조치를 정하고 있다(제13조의3)

❍ **기업형 고향납세**에 대해 「지방세법」은 **법인주민세와 법인사업세에 대한 특별공제**를 정하고 있고, **「조세특별조치법」은 법인세액 특별공제**를 정하고 있다.

- **「지방세법」은** 인가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람·일자리 창생 기부활용사업에 기부한 청색신고(우리나라 성실신고에 해당) 확인대상 법인에 대해 **법인주민세 세액공제**(부칙 제8조의2의2)와 **법인사업세 세액공제**(부칙 제9조의2의2)를 적용한다.
- **「조세특별조치법」은** 인가지방자치단체의 기부활용사업에 기부한 **청색신고 확인대상 법인에 대해 법인세액 특별공제를 적용**한다(제42조의12의2).

□ 기업형 고향납세제의 주요 내용

1. 제도의 특징

❍ 2016년 도입된 **기업형 고향납세제는** 「지역재생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정부(내각부)가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활용사업에 기부할 경우**에 그 기부금액의 **최대 90%를 공제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기업형 고향납세제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수도권 행정서비스에 대해 그 행정 비용을 **수도권 법인관련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기업형 고향납세를 이용해 지방에 기부하고 그 대신 기부금액을 공제받는 구조**이다.
- 기업형 고향납세제는 도쿄도 등 **재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와 기업 본점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단체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 기업형 고향납세제는 기업이 기부를 통해 인가지방자치단체의 기부활용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당한 유착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에게 기부로 설치된 설비를 전속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처음으로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부정이용한 사례가 후쿠시마현 구니미정(福島県 国見町)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례는 후쿠시마현 구니미정에 기부한 기업의 자회사가 사업을 부정하게 수주한 것으로, 내각부는 「지역재생법」에 근거하여 동 지역의 인가지역재생계획을 취소하였다.

❍ 2020년 10월 정부(내각부)는 지방창생 추진에 있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활용한 '사원파견 기업형 고향납세제'의 신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였다(2020.10.13. 閣副 제127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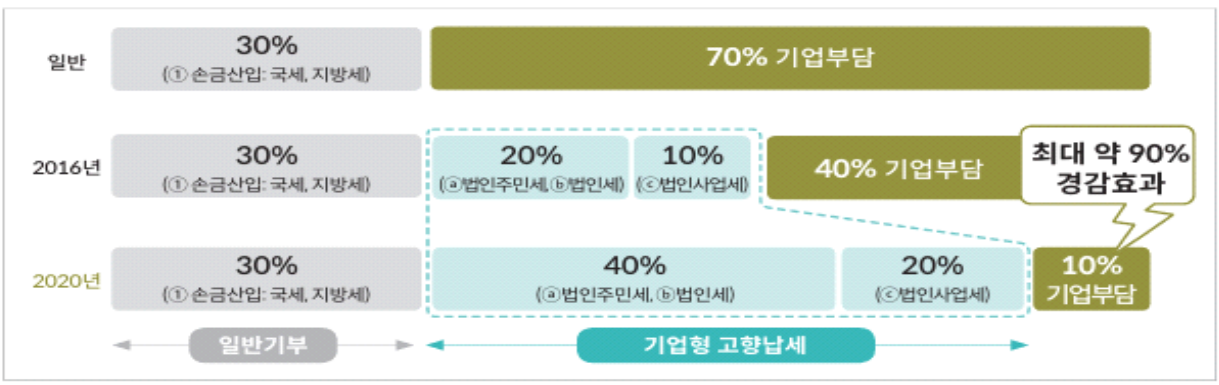
- **사원파견 기업형 고향납세제는** 기부금에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사원파견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이용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기업 인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관계인구(우리나라 생활인구에 해당)까지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기업도 별도 경비 없이 기부활용사업에 기업 노하우를 적용하면서, 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 2024년 4월 1일 현재 119개사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총 157명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 있다.

❍ **일본은**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2020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인구 증가와 지역활성화 문제는 아베 정부의 중대한 국가과제였기 때문에 **2019년에 공제액 확대와 5년 연장 시행을 결정**하였고(2020년 4월 시행), **현행 이시바(石破) 정부에서도 2024년에 3년 재연장을 결정**하였다(2025년 4월 시행).

2. 세제혜택

❍ **일본의 일반적인 기업 기부**는 그 **기부금액의 약 30%가 손금 산입**되어 **국세와 지방세에서 세액 공제**를 받는다(법인세법 제37조, 일반조치). 이에 더하여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통해 기부하는 기업**은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추가적인 세제 혜택**(특별조치)을 받는다.

그림 2 기업형 고향납세제상 세제 조치



출처: 内閣官房[10] 등을 참고하여 작성

- **2016년 도입된 기업형 고향납세제**에서는 **일반조치 30%에 더하여 특별조치로 30%를 공제하여 최대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기업 부담은 약 40%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1억 엔을 기부하면 일반조치의 3천만 엔과 특별조치의 3천만 엔 세제 혜택으로 최대 6천만 엔을 경감받을 수 있다. 기업 부담은 4천만 엔이 된다.
- **2020년 개정된 기업형 고향납세제**에서는 **특별조치의 공제 규모가 기부금액의 60%로 변경**되었다. 이에 **일반조치 30%를 더하여 최대 9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기업 부담은 약 10%가 된다. 예를 들면 기업이 1억 엔을 기부하면 최대 9천만 엔을 경감받을 수 있어 기업 부담은 1천만 엔이 된다.
- 특별조치 기부금액 60% 중에서 기부금액의 40%는 ⓐ 법인주민세와 ⓑ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법인주민세와 관련하여 법인주민세 법인세할 20%가 한도이며, 만일 기부 금액 40%가 전부 공제되지 못한다면 ⓑ 법인세액 5%를 한도로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특별조치 기부금액 60% 중에서 기부금액의 20%는 법인사업세액 20%를 한도로 ⓒ 법인사업세에서 공제한다.

□ 결론: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표 1]에서 현행 우리나라 개인형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개인형 및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비교하였다.

- 현행 제22대 국회(2025. 2. 28. 기준)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주체에 법인을 포함하는 3건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이하, 법인 포함 고향사랑기부제(안)).
- **개정법률안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 포함 고향사랑기부제(안)'는 지역의 특정사업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일본의 '기업형 고향납세제'는 정부가 인가한 지방자치단체 기부활용사업(특정사업)에 기업이 기부**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표 1]의 '기부대상 자치단체' 참고).

❍ **일본은**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 제도 개정으로 공제금을 대폭 확대하고 사원파견을 인정하여 기업형 고향납세 실적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형 고향납세의 실적 향상은 동 제도의 도입 취지인 지방창생을 위한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법인 기부의 가능성 등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기부에 대해서는 2024년 발생한 후쿠시마현 구니미정(福島縣 國見町)의 기업형 고향납세제 부정 이용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관계 형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이미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참고될 수 있다.

표 1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고향납세제) 비교

구분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개인형 고향납세제	기업형 고향납세제
도입 근거	고향사랑기부금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지역·사람·일자리 창생법, 지역재생법
도입 시기	2023년 1월	2008년 5월	2016년 4월
기부 주체	개인	개인	법인
기부대상 자치단체	• 거주 자치단체 기부 불가	• 거주 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답례품 제공 불가)	• 정부인가 지방자치단체 기부활용사업에 기부 가능
제도 재원	• 소득세에서 대부분 공제 • 일부 주민세에서 공제	• 다른 자치단체 주민세에서 대부분 공제 • 일부 소득세에서 공제	• 다른 자치단체 법인관련세에서 대부분 공제 • 일부 법인세에서 공제
세액공제	• 기부금액에 따름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기부금액 16.5% 공제	• 개인 소득에 따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름	• 최대 90% 법인주민세, 법인세, 법인사업세에서 공제받음
기부 한도액	• 최고 한도액 2천만원 • 최저 한도액 없음	• 최고 한도액 없음 • 최저 한도액 2천엔	• 최고 한도액 없음 • 최저 한도액 10만엔
답례품	• 있음(기부금액 30% 이내) • 지역화폐 사용 인정	• 있음(기부금액 30% 이내) • 지역화폐 사용 불가능	• 없음
부작용 방지조치	• 강제모집·적극권유 금지 •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 반환 • 형사처벌	• 고향납세 지정제도 운영 • 정부 지정 제외 자치단체 고향납세제 적용 불가	• 기부기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제이익 제공 금지 • 지역재생계획 인가 취소된 경우 2년 간 재신청 불가

출처: 저자 작성

2 미국의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건조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5-3호, 통권 제266호, 최창수】

◇**미국의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선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이에 대한 예외를 승인**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외 승인서를 **연방의회에 송부**해야 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해당 예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현재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보유**한 대부분의 **함선이 노후화**되어 자국의 해군력이 저하됨에 따라, **외국 조선소에 신규 함선 건조를 맡기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미 해군과 해안 경비대의 외국 조선소를 통한 함선 조달은 조선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2025년 1월 미국은** 노후화된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선을 2050년대까지 점차 퇴역**시키고 **신규 함선을 대규모로 조달할 계획을 공개**하였다. 2025년 2월에는 연방 상원에서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선 건조에 관한 각각의 현행법에 동일한 개정사항을 추가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안)'을 발의**하였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금지규정에 대한 대통령의 예외 승인권에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국가안보상 신뢰할 수 있고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조선 역량을 보유한 국가의 조선소만 함선을 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입법 동향 및 **미국 조선산업 부활을 위해 발표될 대통령 행정명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도입

❍ 2025년 1월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 공개한 '해군 2025년 건조계획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은 2024년 기준 295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30년 뒤인 2054년까지 함선 수를 390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필요한 **총 건조 비용은 1조 750억 달러(약 1,600조 원)**로, **연평균 건조 비용**은 **358억 달러(약 52조 3,7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 특히 **노후화된 함선을 일부 퇴역**시키고, **전투함(combat ships) 293척, 군수지원함(combat logistics and support ships) 71척 등 총 364척을 신규로 조달**할 계획이다.

❍ **미 해군은** 미국 조선소에서 신규 함선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외국 조선소에 함선 건조를 맡겨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조선소에서의 함선 완성 시간**이 외국 조선소에서의 완성 시간보다 **2배 더 걸렸으며**, 미국 조선소의 신규 함선 건조 비용은 외국 조선소에 의한 **신규 함선 건조 비용의 26배**에 달했다.

❍ 2025년 3월 4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선 및 함선 건조 산업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미 백악관에 선박건조실**(Office of Shipbuilding)을 **새로 설치하고 특별 조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을 언급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미 통상 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상 활동 계획서(maritime action plan)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미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또는 그 선체나 상부 구조물의 주요 부품**(major component of the hull or superstructure)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수 없다.**

- 그러나 **대통령이 이에 대한 예외**(waivers)를 승인하는 것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하면 해당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 다만, 대통령은 **예외 승인 결정 통지서를 연방의회에 송부**해야 하며, 연방의회가 **이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해당 예외에 따라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025년 2월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Mike Lee)와 **'존 커티스'**(John Curtis)는 이러한 현행법을 개정하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안)'**(이하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 이 2개 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국가안보상 외국 조선소의 함선 건조를 승인하는 데 있어 동일한 조건을 부가**하고 있다.
- 다만,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은 해군(navy)의 함선에,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안)'은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함선에 적용**되는 **조건**이라는 점만 다르다.

❍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대통령의 예외 승인 결정**에 아래 **3가지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 해군 또는 해외경비대 함선을 건조하는 **외국 조선소는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어야 한다.
- 외국 조선소에서의 함선 건조 비용이 **미국 조선소에서의 함선 건조 비용보다 낮아야 한다.**
- 해군 장관 또는 해안경비대 사령관은 해당 외국 조선소가 미국 함선을 건조하기 전에, **외국 조선소가 중국기업 또는 중국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이 소유·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인증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미국의 동맹국 중 미 해군·해안경비대 함선을 **미국 조선소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조선소를 보유한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조선산업 관련 현행법과 개정법률안의 세부 사항이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주요 내용과 관련 시사점을 살펴본다.

□ **「존스법」**

❍ 미국은 자국의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존스법」(Jones Act)과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을 두고 있다.

❍ 연방의회는 1920년 「상선법(1920)」(Merchant Marine Act of 1920)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안을 최초 발의한 당시 상원의원 '웨슬리 존스'(Wesley Jones)의 성(姓)을 따라 「존스법」이라고도 부른다.

❍ **「존스법」은** 미국 내 **상업활동을 지원**하고 **전쟁이나 국가 비상시 미 해군을 보조**할 수 있는 **상선을 개발·유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 「존스법」 중 제27조는 **미국 해역(waters)에서의 또는 미국 항구(ports) 간 운송은 미국 조선소가 건조한 선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 즉, **외국 조선소가 건조한 상선(merchant marine)이 미국 해역에서 또는 항구 간에 운항되는 것을 금지**한다.

❍ **대통령이** 국가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존스법」에 대한 **예외를 결정하면** 해당 관계부처 장관은 **예외를 승인**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부처 장관은 반드시 예외를 승인**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연방의회는 「존스법」상 금지규정에 대한 면제(exemptions) 또는 예외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또한 대통령의 결정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계부처 장관**들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존스법」상 금지규정에 대한 예외를 승인**하였다.

□ **「번스-톨레프슨법」**

❍ 연방의회는 지난 1965년과 1968년 「국방부세출법」(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s Act)을 개정한 「번스-톨레프슨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번스톨레프슨법」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선이 미 해군·해안경비대 함선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 이후 1988년과 1993년 **'대통령이 금지규정에 대한 예외를 승인**할 수 있고 **예외 승인 통지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문'이 추가·신설**되어, 미국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에 편제되었다.

- 이에 현행 「번스-톨레프슨법」은 최초 금지 조문과 이후 추가된 예외 조문을 합쳐서 부르는 법률을 의미한다.
- 해군 함선에 관한 규정은 '미국연방법전 제10편(군대) 제8679조'에 해안경비대 함선에 관한 규정은 '미국연방법전 제14편(해안경비대) 제1151조'에 각각 편제되어 있다.

❍ 「존스법」의 경우와 달리, 연방의회가 **「번스-톨레프슨법」상 금지에 대한 면제나 예외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한 적은 없고**,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번스-톨레프슨법」상 금지에 대한 예외를 승인한 적도 없다.**

❍ 아래 표는 현행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정리한 것이다.

표 1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 비교표

구분	「존스법」	「번스-톨레프슨법」
공통 목적	자국 조선산업 보호	
대상 선박	상선(물품 및 여객 운송선)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금지 원칙	미국 내 해역에서 또는 항구 간에 물품·여객을 운송하는 상선의 경우,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상선 금지	해군·해안경비대 함선의 경우,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선 금지
면제/예외 승인의 법적 근거	•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은 예외를 승인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은 반드시 예외를 승인해야 함	대통령은 금지에 대한 예외 승인 결정을 할 수 있음
면제/예외 승인 사례	관계부처 장관은 여러 차례 면제나 예외를 승인하였음	대통령이 예외를 승인한 사례는 없음

❍ 현행 「번스-톨레프슨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이 이번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 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안)'이다. 이 2개 개정법률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중 해군 함선에 적용되는 「번스-톨레프슨법」 개정법률안(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번스-톨레프슨법」 개정법률안(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

❍ 외국 조선소의 미 해군 함선 건조를 금지하는 현행 조문은 '미국 연방법전 제10편 제8679조' (이하 '현행 조문')이다.

- **원칙적으로 군대용으로 건조될 함선이나 이러한 함선의 선체 또는 상부 구조물**의 **주요 부품이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것을 금지**한다.
- 그러나 **대통령은** 금지에 대한 **예외를 승인**하는 것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하면 **예외적으로 외국 조선소의 함선 건조를 승**인할 수 있다.
- 다만, **대통령은** 예외 승인 결정 통지서를 **연방의회에 송부**해야 하며, **연방의회가 이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예외 결정에 따른 함선 건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현행 조문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에 따라 추가된 조문(밑줄 표시)의 원문과 번역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현행 조문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의 개정사항

원문	번역문
United States Code Title 10. Armed Forces	미국연방법전 제10편. 군대
Section 8679. Construction of vessels in foreign shipyards: prohibition (a) Prohibition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no vessel to be constructed for any of the armed forces, and no major component of the hull or superstructure of any such vessel, may be constructed in a foreign shipyard.	제8679조. 외국 조선소에서의 함선 건조에 대한 금지규정 (a) 금지규정 하위조항(b)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대용으로 건조될 함선 또는 군대용으로 건조될 함선의 선체나 상부 구조물의 주요 부품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수 없다.

표 2 현행 조문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의 개정사항

(b) Presidential Waiver for National Security Interest (1) The President may authorize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in subsection (a) when the President determines that it is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o do so, provided that (A) the foreign shipyard concerned is located in a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member country or a country in the Indo-Pacific Region that is party to a mutual defens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and (B) the cost of the construction concerned is less than the cost would be if such construction occurred in a domestic shipyard.	**(b) 대통령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한 예외 승인** (1) 대통령은 하위조항(a)의 금지규정에 대한 예외를 승인하는 것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하면 이러한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 해당 외국 조선소가 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 또는 미국과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 (B) 해당 건조 비용이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의 비용보다 낮아야 한다.
(2) The President shall transmit notice to Congress of any such determination, and no contract may be made pursuant to the exception authorized until the end of the 30-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of the determination is received by Congress. (3) Before the construction of a naval vessel, or a major component of the hull or superstructure of a naval vessel, may commence at a foreign shipyard pursuant to this subsection, the Secretary of the Navy shall submit to Congress a certification that the foreign shipyard is not owned or operated by a Chinese company or a multinational company domiciled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2) 대통령은 해당 결정 통지서를 연방의회에 송부해야 하며, 연방의회가 결정 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계약도 해당 예외에 따라 체결될 수 없다. (3) 이 항에 따라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선 또는 해군 함선의 선체나 상부 구조물의 주요 부품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군 장관은 해당 외국 조선소가 중국 기업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은 외국 조선소에서의 해군 함선 건조를 허용하는 취지의 법률안이 아니다.** 이미 대통령은 국가안보 이익을 위해 예외를 승인할 수 있으므로, **예외 승인 결정에 대하여 다음 3가지 조건**들을 추가하고 있다.

- 해당 외국 조선소가 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 또는 미국과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위치할 것**

- 해당 건조 비용이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의 비용보다 낮을 것**
-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선 또는 그 선체나 상부 구조물의 주요 부품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군 장관은 **해당 외국 조선소가 중국기업 또는 중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기업이 소유·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연방의회에 제출**할 것

□ 요약 및 시사점

❍ 미국의 현행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은 자국의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이다.

- 「존스법」은 미국의 상선 건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미국 해역에서 또는 항구 간에 물품·여객을 운송하는 데 있어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금지에 대한 면제나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 「번스-톨레프슨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함선을 해군·해안 경비대 함선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외국 조선소에 의한 함선 건조를 허용하는 예외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번스-톨레프슨법」상 대통령의 예외 승인 결정 권한과 관련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성 측면에서 충족해야 하는 외국 조선소에 대한 법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 이러한 요건의 핵심은 오직 국가안보상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 미국 조선소보다 저비용으로 함선 건조가 가능한 국가의 조선소에만 미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건조를 맡기도록 제한하고,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기업은 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면 **해당 국가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우리 조선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 개정법률안이 입법에 반영된다면, 향후 **트럼트 대통령이 예외 승인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개정법률안에 추가된 요건에 따라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기업을 해당 외국 조선소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국가 안보적 우려가 없는 동맹국의 조선소에만 미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건조를 맡긴다**는 국가안보적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함선 건조의 비용적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의 조선소에 함선 건조를 맡긴다**는 경제적 효율성도 획득할 수 있다.

❍ 향후 연방의회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에 제시된 법적 요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법률안과 유사하거나 이에 추가되는 법적 요건을 규정하는 또다른 법률안들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머지않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안을 둘러싼 연방의회의 입법 동향을 향후 공개될 행정명령의 내용과 함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3월 첫째주	보건복지	○강원도 1인 가구 특성과 정책방안 : 강원도 사회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연구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트럼프 2기에 따른 미국 제약바이오정책 동향 ○ 초고령사회, 프랑스의 노인복지정책과 시사점 ○ 초고령사회, 정년연장과 사회복지 현장의 쟁점 ○ (2025년) 복지 전망과 경기도의 대응 방향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 동 지역 내의 농어촌지역 조정 방안 연 ○전남 농기계 교통사고 특성에 따른 안전 및 예방대책 연구
	행정안전	○ 신규 사회재난 대비 미래 전망과 대응방안 ○ 광역비자(R비자) 도입 실효적 추진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쇠퇴 주거지역 관리 방안 연구 ○ 접경지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 지방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전략 ○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 지역혁신성장 역량 제고 방안 ○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국토교통	○ 지선국도 지정에 대비한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방안 ○부동산 개발금융(PF)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방향
	외교통일	○ 감성적 통일논의를 넘어 경제통합으로 ○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과 시사점 ○ (2025년) 독일 총선 결과 및 전망 ○ 구(舊) 동독의 2민족론과 북한의 동족관계 부정 ○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과 해외지원 ○ 분단 80년, 국제질서의 변천과 대북정책의 진화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3월 첫째주	외교통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 ○(2025년)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정세 전망 : 일본 ○북한과 베트남의 '친선의 해' 설정 의미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한 달을 맞은 트럼프 2기와 인도-태평양 지정학 : 경과와 전망 ○김정은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 ○미국-인도 협력 관계 및 2025년 2월 정상회담 주요 내용 ○북한의 '지방발전20×10정책'의 변화 ○인도의 트럼프 대응 통상전략과 시사점
	국토교통, 행정안전	○경기도 교통카드 데이터 공공성 증진 방안
	여성가족	○아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사회, 제주지역 노키즈존 실태와 시사점 ○경기도 민간기업 가족친화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	○교육기반형 지역발전 모델 구축 연구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운영성과 분석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양자컴퓨터, 기존 컴퓨팅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 ○(2024년) 과학기술혁신정책·전략 네트워크 강화 연구
3월 둘째주	외교통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미·중 경쟁과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이익 ○북한군 러시아 추가 파병의 의미와 파급영향 ○자유주의 패권의 종말 : 미-러 종전 협상의 전망과 함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2차 회의 결과와 그 함의 ○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전략 ○북한의 주요 군사 동향 :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전망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2024년) 김정은 정권 돌격대의 인권적 함의 : 강제노동
	정무	○서민의 삶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서민금융 정책방향
	국토교통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콘크리트 보도의 대전시 도입 가능성 검토 연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2025년 주목해야 할 진출 유망국 6 ○(2024년) 중형조선산업 동향 및 시사점 ○미국 해양 조선업 시장 및 정책 동향을 통해 본 우리 기업 진출 기회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3월 둘째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영국 사이버 모니터링 센터(CMC) 개소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딥시크: AI 시대의 스푸트니크 쇼크인가? ○당신도 곧 아이언맨! 웨어러블 로봇이 온다 ○MLflow, AI시대에 더욱 강력한 오픈소스 MLOps 플랫폼 ○딥시크(DeepSeek) 출현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보건복지	○제주지역 산후조리 실태와 지원 방안
	기획재정, 외교통일	○제주지역 대 ASEAN ODA 활성화 방안 연구
	환경노동	○(2024) 연 기후특성 보고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에 대한 소고
	기획재정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공재정 혁신 ○폰 데어 라이엔 2기 EU 집행위원회의 5개년 경쟁력 강화 계획
	국방	○중국, 대만의 해양전략과 무인 해양 무기체계 개발
3월 셋째주	국토교통	**○새만금 트라이포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관문형 복합물류의 새 지평을 열자!** ○전라남도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노인보호구역 확대 방안 ○세종시 신도심 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지가 변화
	행정안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및 중장기 개선 방안 연구 ○최신 드론영상을 활용한 재난·재해 대책 수립 및 활용 방안
	국방	○북한 핵추진잠수함(SSBN) 건조 공개 배경 및 함의 ○북한 전략핵잠 건조와 핵안보 : 전략적 의미와 방책 진단 ○대전 국방벤처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바이오 안보 전략. 1, 한국형 「핵산 합성 스크리닝」 제도의 도입 필요성 ○커지는 동아시아 해저케이블 안보 위협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트럼프 2.0 : 구리(Copper) 전쟁과 나비효과 ○(2025년) 美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트럼프 2기 미중 통상분쟁 경과 및 우리 기업 영향
	외교통일	○트럼프의 질주와 남북관계 ○트럼프 2기 대(對)타이완 정책의 방향성과 미중관계의 함의 ○북한 인권단체의 소멸 위기 : 현황 및 대응방안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노력 현황과 제언 ○KINU 북한종합편람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3월 셋째주	환경노동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발전 방안 연구 ○직장괴롭힘(성희롱) 사건의 조사절차, 조사방법, 심문기법 ○출연연 탄소중립 분야 연구 성과 현황 및 시사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수립 방안 연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한국 농업의 준비
	국토교통, 행정안전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과 과제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AI 기반 갈등관리 DB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안
	보건복지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지역 단위의 경제 불평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건강권 제고를 위한 사회적 처방 도입 방안 연구 ○(전문가가 주목한) BiOHEALTH FOCUS 2025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주거급여 제도의 위상 재정립 방안 연구 ○부산광역시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정책 확대방안 연구
	보건복지, 행정안전	○재난 정신건강 지원에서의 협업체계 강화 방안
	정무	○진짜 금값이 된 금, 얼마까지 갈까?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서울형 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기획재정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법제사법	○정당공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집행 목적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에 관한 헌법적 쟁점 검토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철원군수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를 일반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종전 업체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철원군, 의견25-0074, 2025. 3. 6.)

□ 질의요지

가. **철원군수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종전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철원군수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때, **환경부장관이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지침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서 정하는 **평가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군수등"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제2호), **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제3호)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제1호)** 등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2항** 등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는 시설공사, 기술·학술연구 용역 및 물품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제2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강원도용역심사기준”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별표 3 및 별표 4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군수등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에 관한 계약은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에 관한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지방계약법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인 '낙찰자결정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내 시·군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에도 적용되는 기준인 **'강원도 용역심사기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의 입찰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할 때 **종전 용역수행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철원군수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종전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는데, **이 법령**에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기능을 하는 **행정규칙인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이하 "환경부평가지침"이라 한다)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것이 아니어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환경부 내부적으로 만든 지침으로서 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때, **환경부평가지침에서 정하는 평가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도 상위법령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 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 7. (생 략)

⑨ ~ ⑩ (생 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삭제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포항시장이 관급자재에 관한 수의계약을 할 경우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포항시, 의견24-0405 2025. 2. 20.)

□ **질의요지**

포항시장이 관급자재에 관한 수의계약을 할 때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 법령에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기능을 하는 행정규칙인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5장**에서는 **수의계약의 배제대상,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등 수의계약대상자 선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계약집행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계약집행기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대방이 되어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집행기준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위원회에서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질의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 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생 략)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바. (생 략)

6. ~ 8. (생 략)

②·③ (생 략)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 ④ (생 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Ⅵ. 법령 해석 사례

Ⅵ. 법령 해석 사례

1 판매할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25-0015, 2025. 2. 28., 농림축산식품부】

□ 질의요지

「축산법」 제2조제8호에서는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는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은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이고, 그 외는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임(「축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호 참조)),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가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 회답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축산법」 제2조제8호에서는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가축사육업은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것과 더불어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업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는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축산법」** 제2조제8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59호로 일부개정된 **「축산법」에서 가축사육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후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26호로 **일부개정된 「축산법」**에서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현행과 같이 규정하여, **가축사육업에는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등 다른 축산업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이를 **모두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은 가축의 사육이나 젖·알·꿀의 생산을 통해 이를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9. 12. 회신 12-0442 해석례 참조),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제22조제2항·제4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제23조),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제33조의2) 한편,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기르는 가축 및 축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제26조), 점검 등을 받을 수 있으며(제28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없이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3조제1호)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56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바,

명시적 규정 없이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8의2. ~ 10의2. (생 략)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생 략)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의 범위 【여주시 24-0767, 2025. 2. 24.】

□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이하 "전문체육시설"이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하 "생활체육시설"이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대상자”라 함) **2인 이상의 사적 이용**(각주: 주최자, 특정한 의미나 목적, 기념할 만한 사건 등이 없이 2인 이상이 모여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을 **포함**하는지?

□ 회답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대상자 2인 이상의 사적 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나 활동**으로, 제1호에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제2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제3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제4호에서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등에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행사”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의 의미를 고려하여 해석**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정 단체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을 위한 행사**를,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대상자를 위한 행사를 각각 규정**하여 그 행사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정 단체 등의 주체가 공적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사도 이러한 행사에 준하는 정도로 공적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이 적용**되나,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서 **공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 체육시설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용료의 징수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7호**에서는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적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대상자들의 사적 이용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할 것이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행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대상자 2인 이상의 사적 이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 등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가, **2016년 8월 2일** 대통령령 제27426호로 **일부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제5호), 학교 밖 청소년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제6호)에 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를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면서,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활동”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체육시설을 개별적·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대상자 2인 이상의 사적 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 7. (생 략)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